

예 산 총 칙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총 계	3,532,915,000	105,987,450
일 반 회 계	3,052,922,000	91,587,660
특 별 회 계	479,993,000	14,399,790
공기업특별회계(지역개발기금)	282,803,000	8,484,090
기 타 특 별 회 계	197,190,000	5,915,700
· 강 원 도 립 대 학 운 영	8,351,000	250,530
·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	184,579,000	5,537,370
· 학 교 용 지 부 담 금	4,260,000	127,80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(채무부담행위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(명시이월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,462,806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2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공무원 총액인건비
- (2) 차입금 원리금상환
- (3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